

2026 문화분야 사회적기업 우수사례 포상 공고

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(예비)사회적기업 대상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 후보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.

2026. 8. 28.

문화체육관광부 장관

□ 포상 목적

- 문화예술·체육·콘텐츠·관광 등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·육성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·포상

□ 포상 개요

- (규모)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1점
- (대상)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
 -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(3년 이내)
 -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기업
 -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 해당 분야에서 계속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
- (수공기준)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공적이 있는 자
 - 단,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3년 이하 수공자 표창 가능*
 - * 특별한 공적에 대해 공적조서에 작성 필요
 - 추천대상자 자격의 추천제한 사유 및 표창 금지 등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불가

□ 선정 기준

- 사회적기업 성과 및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
 - 문화서비스의 차별성 및 독창성(20), 사회적 성과(30), 경제적 성과(30), 지속가능성(20), 사회적가치지표(SVI, 가점)*

*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 및 영향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회적 성과(60), 경제적성과(30), 혁신성과(10) 등을 측정한 결과

□ 신청서 접수

- (접수기간) '26. 8. 31.(월) ~ 9. 6.(일) * 도착분에 한함
 - (접수방법)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
 - (제출 서류)
 - 장관표창 동의서 < 서식1 > (한글파일과 PDF파일 함께 제출)
 - 공적조서 사본 < 서식2 > (한글파일과 PDF파일 함께 제출)
 - 사회적가치지표 결과 증빙자료 < 별첨 제출 >
- *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대상자 선정 관련 자료는 미공개

□ 추진 일정[안]

- 계획 공고(8.28.) ▶ 공적조서 접수(8.31.~9..6.) ▶ 결격사유 조회(9월 2주)
 - ▶ 공적심사위원회 개최(9월 3주) ▶ 표창 수여(9월말)
- * 대상자 선정 결과 개별 통보

□ 서류 제출 및 문의처

-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
 - 전화 : 044-203-2510, 2564
 - 이메일 : leeyb07@korea.kr, dustn710@korea.kr

< 추천대상자 자격 >

○ 수공기간

- (민간인) 특별한 공적을 제외하고는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
- (기관 및 단체)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단체

○ 이중표창 금지: 동일한 공적에 대해 이중표창 금지

○ 재표창 금지: (단체) 2년 이내 동일 분야 공적으로 재표창 금지

○ 추천 제한 사유

[공통]

- 감사조사,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
- 각종 공·사의 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수여가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(민원 야기, 민·형사재판 계류, 언론 보도 등)
-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(단체) 또는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(단체)
- ※ 단,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 추천 가능
- 「국세기본법」, 「관세법」 또는 「지방세징수법」 따라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

[민간인]

○ 형사 처분을 받은 자(적용범위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름)

- ※ 단, 「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, 소관부서는 자체적으로 확인하여 영예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함

○ 최근 2년 이내에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*

* '임원'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
- 다만,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
○ 최근 2년 이내에 「공정거래관련법」에 따라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,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임원

※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(동일사건번호)는 1회로 처리

- 다만, 법인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

○ 최근 2년 이내에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

※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: (개인)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,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원,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, 임금체불사업주, 각종 비리 부조리,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(단체) 임직원이 민간인 포상제외자에 해당되거나, 포상대상 단체가 2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단체표창을 받은 경우

[단체]

○ 최근 2년 이내에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되거나, 「공정거래관련법」에 따라 고발·과징금 처분·시정명령을 받거나,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임금체불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단체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간인표창"과 동일함

〈 참고 〉 평가 기준(안)

구분	지표 정의 및 내용
서비스 차별성 및 독창성 (20)	▪ 기업의 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, 사업 구조 및 전달 방식 등의 차별성 및 독창성
사회적 성과 (30)	사회적기업 인증 유형을 고려 아래사항 평가 ▪ 문화향유 및 격차 해소 기여도 ▪ 고용 및 종사자 지원 성과 ▪ 지역사회 연계 및 환원 ▪ 주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및 재투자 정도 등
경제적 성과 (30)	▪ 재정 건전성 및 자립 역량 ▪ 고용 창출 및 유지 성과
지속 가능성 (20)	아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▪ 사업 모델의 확장성 및 밀 대응력 ▪ 사회적 영향력 및 지속성 ▪ 사회적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등
사회적 가치 측정 지표 (SVI, 가점)	▪ 우수 이상 등급*의 경우, 가점 부여 - 탁월(10점), 우수(5점) * 5단계 : 탁월, 우수, 양호, 미흡, 취약